

일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현상과 과제

번역 : 고 영 아*

1. 머리말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제정에 의하여,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미노세키원자력발전소, 신이시가키공항, 헤노코미군비행장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불충분하다고 하는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단계부터의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의 충실, 시민참가의 촉진 등과 함께 사법심사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판례 데이터베이스(LEX/DB)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소송은 20년 전 정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여, 근래 10년 정도는 매년 10건에서 20건 정도의 관련판결이 나오고 있다¹⁾.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유형을 보면, 인·허가 등의 취소 소송과 민사 유지 소송이 각각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후술하는 것처럼 항고 소송의 원고적격이 한정되어 있어, 주민 소송의 비율도 높다(전체의 약 4분의 1). 본고에서

* 강원대 강사, 법학박사

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동향에 대해서는, 예컨대 大久保規子, 「環境影響評価と訴訟改革」, 環境と公害, 40卷 2号(2010年) 26頁 以下, 柳憲一郎, 「環境影響評価法施行後の訴訟の動向」, 法律論叢 83卷 2=3号(2011年) 331頁 以下 참조.

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사법심사의 절차·기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2.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특징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의 많음

일본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는 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대상 사업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한정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조건 자체가 적다²⁾.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소송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법의 대상 사업의 사업주체는 발전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인 것에 대하여, 조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민간사업도 적지 않다. 또 법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사업의 인·허가 등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뜻을 정하는 규정(이른바 횡단조항)이 두어져 있고, 당해 인·허가 등은 인·허가 등의 근거법규에 환경배려 규정이 두어져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환경배려를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인·허가 등에 반영시킬 것을 의무지우는 횡단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독자적인 과제가 존재한다³⁾.

(2) 여전히 현저한 원고적격의 벽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인·허가의 취소 소송에서는 2004년의 행정

2) 종래의 환경영향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환경성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go.jp/policy/assess/3case.html>).

3) 하급재판소 판례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고려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 한편, 각 개별법의 처분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유무나 평가결과를 고려하려고 하는 것도 적지 않다.

사건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의 실질적 확대가 도모된 후에도, 원고적격의 문제가 여전히 소송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확실히 행정 사건소송법 개정 직후에는 오다큐 소송 판결(最判2005年12月7日 民集59卷10号2645頁)에 의하여 종래의 판례가 변경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철도의 고가화사업 인가처분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자라도 조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건강·생활환경에 관련된 현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취소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판례에는 당초 기대된 정도로 큰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3) 주민 소송의 한계

1990년대 중반 이후, 원고적격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주민 소송이다. 주민 소송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여 온 것은 확실하나, 그 한계도 명백해지고 있다. 주민 소송이란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을 행한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자치법 제242조)를 거쳐 제기하는 소송이다(지방자치단체법 제242조의2). 주민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고, 법규의 적정한 운용을 확보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민중 소송의 일종이다. 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문화재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행위의 원인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주민 소송이 제기되는 예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러나 첫째,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을 다투기 곤란하다(예컨대 안바담에 관한 東京地判平成2009年5月11日 判例自治322号51頁 참조). 둘째, 어떠한 경우에 선행행위(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이 후행행위(공금지출)의 위법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고베공항 소송에 관한 神戸地判2005年8月4日(判タ1241号98頁)은 가령 선행위인 환경영향평가서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위법에 의하여 본건 용지의 이용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공금지출의 유지에 관해서는 선행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유지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하급재판소 판결의 경향이다(린카이부도심 아리아케북지구 매립에 관한 東京地判所2003年11月28日 LEX/DB 28090658 等). 셋째, 주민 소송 중 가장 수가 많은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가 존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예컨대 가와사키시 이쿠다녹지 오카모토미술관 소송에 관한 横浜地判2001年6月27日 判例自治254号68頁).

이상의 판결의 당부는 별도로 하고, 이 문제들은 주민 소송이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직절하게 시정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요부를 둘러싼 분쟁의 다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둘러싼 쟁점은 조사항목·수법, 평가결과, 참가절차의 하자 등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른바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요부를 둘러싼 다툼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전형례로서는 히라카타시가 3헥타르 이상의 주택단지건 설·개발행위를 조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바, 약 5헥타르의 주택단지의 개발을 계획한 사업자가 토지를 2.99헥타르와 1.89헥타르로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것의 위법을 물은 사안(大阪地判2009年6月24日 判例自治327号27頁) 등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서는 이전부터 그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외의 대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하의 총량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환경배려를 촉구하는 장치가 극히 약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과 대상외 사업과의 사이에 환경배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맞는 환경배려를 의무 지우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회피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5)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재실시를 구하는 소송의 등장

(4)의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요부나 허술함을 묻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재실시를 구하는 편이 직절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처분유지 소송의 법정화나 가구제의 충실이 도모되었다고는 하여도, 항고 소송이든 주민 소송이든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공사 진척에 의하여 불가피한 환경개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또 본래 사업자에게 있어서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면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가 있다. 외국에서도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권의 침해로서 참가절차 실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예가 존재한다.

현행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당사자소송의 활용으로, 하급재판소 판례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도 있다. 즉 청소공장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横浜地判2007年9月5日(判例地方自治303号51頁)은, 가나가와현 조례는 관계주민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쓰레기소각시설 사업자와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주민이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⁴⁾. 현재 오키나와·헤노코에서의 미군비행장 이전계획을 둘러싸

4) 다만 이 판결은 이 절차적 참가권의 보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청구권이나 불복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에서 보면 동 조례가 바로 주민에 대하여 실시청

고도, 국가를 피고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들을 다시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3. 환경영향평가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

종래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이 인정된 사안은 드물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불비를 지적하는 판례는 결코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판례 분석을 근거로, 환경영향 평가를 둘러싼 사법심사의 올바른 형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수많은 인·허가 취소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인·허가 등의 취소·위법을 이끌어 내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인·허가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가 주요한 쟁점이다. 법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서는 횡단조항의 존재를 근거로, 대상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심사시에 이 점들이 심사되고 있다.

(1) 환경영향평가의 불실시

법 또는 조례에 의하여 의무지워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당해 사업에 관한 인·허가나 공금지출이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등도 위법하게 된다. 이 유형에는 적격심사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본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필요하다고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법의 운용상, 종래 대부분의 적격심사 대상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불실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로서는, 전계 가와사키시 이쿠다녹지 오카모토미술관 소송(주민 소송) 판결이 있다. 동 판결은 가와사키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

구권까지 인정한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진 개발행위는 조례 위반의 위법행위가 되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래 다음의 단계로 적법하게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공금지출도 정해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⁵⁾.

(2) 절차 위배의 환경영향평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하자를 제외하고, 당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전제로 한 인·허가 등도 위법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EU에서도 조사항목·방법, 대체안 검토가 불충분하였던 경우나 참가권 침해의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본질적인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인·허가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종래 일본의 판례에는 당해 환경영향평가에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가치가 없다고까지 해 버릴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도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불실시와 동일시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한 인·허가 등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듯한 어투의 판결도 존재하였다(와지로 간석지 소송에 관한 福岡地判1998年3月31日 判時1669号40頁).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여, 하자의 태양·하자에 따라서는 인·허가 등의 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비조사라고 칭하는 스코핑 (방법서절차) 전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듯한 대규모 조사를 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사방법·항목 등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이 의견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예

5) 大久保規子, 「岡本太郎美術館建設事業費等返還請求事件」, 判例地方自治 261号(2005年) 41頁 以下 참조.

비조사 자체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개변·파괴된다는 등 본조사에서의 적절한 환경정보수집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이시가키 공항 소송에서 那覇地判2009年2月24日(LEX/DB25440651)은 방법서 작성에 관한 현재의 상황확인조사를 이용하여 대규모 조사가 행해진 문제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데 앞선 절차로서 방법서의 절차를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청구 자체는 기각).

두 번째로 종종 다투어지는 것은 조사방법·항목, 조사결과 분석·평가가 적절한지 여부이다. 환경영향평가 소송 중에서도 비교적 수가 많은 도시계획사업안건에 관하여는, 근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한신철도 니시오사카 연장선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인가처분에 관한 大阪地判2008年3月27日(判タ1271号109頁)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범용성·신뢰성이 높은 모리토식에 준거하여 철도소음의 예측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 예측결과가 학식경험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소음대책 지침치를 밑돌고 있는지 여부는 본건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사항으로, 그것을 오인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의 기초를 상실케 한다⁶⁾. 또 동 사업의 공사시행인가에 관한 大阪高判2007年10月25日(判タ1264号138頁)은 소음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일부에 과오가 있는 점을 인정하여, 당해 부분을 소음의 판단자료로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어느 판결도 결론으로서는 청구 기각).

나아가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도 아키루노IC 소송의 제1심 판결(東京地判2004年4月22日 判時1856号32頁)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에 있어서는 하자 있는 영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목시적인 전제요건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본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로부터 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6) 大久保規子, 「西大阪延伸線都市計画事業認可処分取消請求事件」, 判例地方自治326号(2010年3月), 73頁 以下 참조.

을 용이 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점, 본건 환경영향평가서는 애당초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점에서까지 느슨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소음에 의한 피해 발생을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인정의 위법도 인정하고 있다(단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다만 조사방법·항목에 불비가 있었던 경우에는 많은 추가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어떠한 요건 하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안이하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절차의 경시를 조성할 수 있는 반면, 상황의 변화에 맞게 추가조사를 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하자의 정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의견서 제출 절차나 설명회가 실시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던 경우, 준비서·평가서에 대한 의견 기재,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 기재가 부적절하였던 경우 등, 참가 절차의 하자도 그 태양·정도에 따라서는 인·허가 등의 위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의견모집이나 설명회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우나, 예컨대 일단 의견서 절차 등을 끝낸 후에 조사항목·수법을 대폭 변경하거나 불완전한 방법서 등을 공고하여 이에 대한 의견모집을 행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관한 하자

전술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은 횡단조항에 의하여 인·허가권자 등에 대하여, 평가서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의 심사를 의무지우고 있다(33조 이하). 이 때 인·허가권자 등은 그 근거법규가 정하는 인·허가 등의 기준과 환경보전에 관한 심사의 결과를 함께 판단하여, 당해 면허 등의 거부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허가권자 등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에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다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허가 등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위법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인·허가권자 등은 다양한 필요고려요소를 적절하게 형량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인·허가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다. 공공사업에 관한 소송 중에서도 비교적 수가 많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말하자면, 환경보전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도시계획결정과 그 후의 도시계획사업 인가의 관계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의 전제가 되는 도시계획인 위법하다면 동 인가도 위법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기초로,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에 오인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중요한 사실의 기초가 결여된 경우 또는 사실에 대한 평가가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점, 판단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또는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最判2006年11月2日 民集60卷9号3249頁). 이 기준은 행정에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최고재판소는 예컨대 건설부장관이 임업시험장 터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유지를 상기 공원 구역에 포함하여 정하는 것에 대하여, 민유지를 대신하여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도 도시시설 구역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진 도시계획결정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最判2006年9月4日 判時1948号26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안으로서는 하급재판소 판결이기는 한데, 오

다큐 고가화 소송의 제1심 판결(東京地判2001年10月3日 判時1764号3頁)은 고가식을 채용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위법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참작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과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단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4. 금후의 전망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근래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재량통제밀도의 일반적 향상 경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적부에 대하여도 이전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행하는 것이 늘고 있다. 확실히 환경영향평가의 위법을 인정한 사안은 많지 않지만, 그 불비를 지적하는 판례는 결코 적지 않다. 이 사례들 중에는 사실상 추가조사나 추가 보전조치가 취해진 예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소송이 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판단은 여전히 사안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황이고, 또 그 통제밀도도 구미 각국에 비하면 아직 약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원고적격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실제적인 심사 사례의 축적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특히 EU에서는 「환경에 관한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가지령(2003/3/5 /EC)」(시민참가지령)(2003년)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지령(EIA지령)에 새로운 규정이 삽입되어(제10a조 등),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시민이나 NGO이 사법 액세스가 보장되어 있다⁷⁾. 실제로 참가권의 침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

7) 환경영향평가 지령의 개정은 「환경문제에서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가 및 사법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조약」(오르후스 조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동 조약은 ① 환경정보에 대한 액세스권, ② 환경에 관한 정책결정에 대한 참가권, ③ 사법에 대한 액세스권이라고 하는

자를 이유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예도 드물지 않다. 또 많은 EU 국가들에게는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밀도 높은 심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 외 EU의 행정재판관협회의 환경위원회에서는 EU 각국의 사례를 제재로 하여 논의하는 등 재판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식견이나 인식의 공유가 진전되고 있는 점도 재량통제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구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대만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한 환경법에 순차적으로 시민 소송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예컨대 「대만환경유니온」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관광리조트의 건설 유지를 구한 사안에서, 2007년 9월 가오슝행정고등재판소는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또 태국에서도 환경단체 소송이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고, 맛따퓏 콤비나트를 둘러싸고 지구우난화방지협회가 제소한 사건에서는 2009년에 최고행정재판소가 환경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불비를 이유로 70개 이상의 사업의 일시 유지 판결을 내렸다⁸⁾.

1970년의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법안⁹⁾이 심의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일본판 SEA의 도입, 시민참가의 개선, 사후조사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사법 액세스의 보장을 통하여 액세스 하자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보

세 가지 권리를 NGO도 포함하여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르후스 조약과 사법 액세스의 보장에 대하여서는, 大久保規子, 「環境公益訴訟と行政訴訟の原告適格-EU各国における展開-」, 阪大法学 58卷3=4号(2008年), 103頁 以下 참조.

8) 土井利幸, 「マップアウト工業団地判決とその後」, 環境と公害 40卷 2号(2010年), 45頁 以下 참조.

9)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환경성 홈페이지 참조(<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2295>).

하고, 위법성 판단의 실체적 기준의 명확화,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개정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쟁송절차의 구축이 논점이 하나였다¹⁰⁾. 논점 정리에서는 ①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 액세스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가, ② 액세스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③ 도시계획제도 등 타제도와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④ 공공사업의 원활한 실시의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사항들 중 특히 난관이 된 것은 ②, ④의 문제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의 지연가능성에 대하여서는 EU의 실태조사에서도 남소의 존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직절하게 액세스의 하자를 다투는 제도를 정비하는 편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해결의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서는 최근 서서히 일반적인 재량통제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쟁송제도의 도입이 이론의 진화를 더욱 재촉할 것이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에서 있어서는 시간적 제약에서 쟁송 제도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거의 행해지지 않아¹¹⁾, 구체적인 검토의 장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중앙환경심의회 답신 「금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2010년2월22일) 참조.

11)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설명을 포함하여 의사록으로써 A4 용지 3매 정도의 시간을 할당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또 변호사회로부터는 일본변호사연합회 「금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연에 자세에 대하여(안)(환경영향평가제도 전문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의견」(2010년2월12일), 도쿄변호사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2009년2월9일) 등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